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4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윤재옥ㆍ김기웅ㆍ이인선

서천호 · 최보윤 · 김성원

권영진 · 엄태영 · 김미애

김 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,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 사관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,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,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(안 제60조의3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0조의3제4항 중 "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"를 "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의3(한시적 종사명령) ①	제60조의3(한시적 종사명령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	4
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	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임명한	또는 역학조사관은 「국가공무
<u>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</u>	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
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	제공무원으로, 시・도지사 또는
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	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임명한
것으로 본다.	<u>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</u>
	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